



## 알기쉬운 생활법률 사례

### 제품의 제조시기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의 책임

**Q:** 저희 업체는 가방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업체는 2008년 1월경 서류가방을 제조하여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였는데, 당시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매장에서 가방을 회수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1월경 가방의 가격을 대폭 할인하여 다시 대형마트에서 위 가방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대형마트에서 가방을 구입한 소비자가 가방안에 부착된 태그(tag)에 기재된 제조년월(2008.1)과 가격태그에 기재된 제조년월(2009.1)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형마트 고객센터를 통해 제조시기를 속인 사기판매라고 주장하면서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가격태그는 저희 업체가 납품일을 기준으로 인쇄하여 직접 가방에 부착한 것입니다. 현재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진정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저희 업체가 이에 대하여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A:**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3조에서는

① 사업자들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 2. 기만적인 표시·광고 |
|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②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0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서는



## II.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지침

### 7.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일자, 포장일자, 유효기간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업체가 2008년 1월에 생산된 가방에 제조일자를 2009년 1월로 표시한 가격태그를 붙여서 공급한 행위는 이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업체 측 담당자의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업체에 시정조치의 명령(법 제7조), 당해 표시·광고행위의 일시중지의 명령(법 제8조), 과징금 부과(법 제9조) 등의 재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업체는 부당한 광고·표시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법 제10조). 또한 고의로 위와 같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법 제17조), 이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도 1억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19조).

한편 형사법적 관점에서 신청업체의 담당자에게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만일 신청업체의 담당자가 제조일자를 정상적으로 표시하였다면 가방의 판매가 부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방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조일자를 고의로 최근의 날짜로 허위표시하여 마치 신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가방이 상품가치가 저하되어 극단적인 할인판매(소위 '떨이', '땡처리')되는 경우처럼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조일자가 가방의 구매에 있어서 거의 의미가 없는 정보이고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을 상황이었다면, 신청업체의 담당자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사법적 관점에서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조일자가 허위로 표시된 가방을 구입함으로써,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신청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데 위와 같이 사안에 따라 손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약한 수준의 위자료 정도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